



한국환경산업기술원




수신자 주식회사 큐브이 대표이사
(경유)

제목 이산화염소 지속방출 제품 위해성평가 신청에 대한 회신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화학제품안전법」 제9조, 제10조 및 고시 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·표시기준」 제5조에 따라 귀사에서 신청한 위해성평가 신청 건('20.10.20)과 관련하여,

| 번호 | 제품명 | 품목 | 용도 | 제형 |
|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|
| 1 | QVE - S | 살균제, 탈취제 | 밀폐공간용 | 고체형 |

3.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결과, 동 제품의 용도를 ‘밀폐공간용’으로 한정하여 사용할 경우 인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임을 알려드립니다.
 - * 밀폐공간용 : 냉장고, 신발장 등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한하며,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, 또는 인체 주위에 부착하거나 착용하여 사용하는 제품은 해당하지 않음
4. 이에 「화학제품안전법」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위 용도 및 제형에 따라 신고를 이행한 후, 판매시 정확한 제품 용도와 함께 해당 용도의 사용금지 안내문구를 제품 겉면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 끝.

한국환경산업기술원 

★선임 **이건우** 센터장 전결 12/11 박필주

협조자

시행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(2020.12.11.) 접수 ()
-2192

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/ http://www.keiti.re.kr

전화 02-2284-1834 /전송 02-2284-1889 / envgw@keiti.re.kr / 공개

* 업무처리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업무담당부서에 전화 또는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* 업무관련 비위사실 신고: 감사실(전화:02-2284-1231), 인터넷: 기술원 홈페이지-고객센터-신고센터(클릭)